

生活 상담

船員 手帖 발급 절차

【문】정확한 선원수첩 발급절차를 알고 싶다. <金判守·釜山鎮구 釜田동389>

【답】신규·분할재발급·무효(기간경과) 등 사유로 선원수첩을 발급받으려 할때는 민간인 선원진술서 6통·호적등본 1통을 준비하여 승선하려는 당해 선박(선주) 회사에 제출, 항만청결유 시결할곡을 통한 선원조회(기간 20~30일소요)가 끝난후 선원수첩 발급신청을 낸다. 서류는 ①선원수첩 교부신청서 1통 ②건강진단서 1통 ③병적증명서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1통 ④신원조사 회보 결과 번호(항만청 민원실에 비치)확인 ⑤선원이력카드 1통(항만청 배부) ⑥사진 3장(반명합판·6개월내 동일 워관)이런 된다.

미성년자(20세미만)의 경우는 ①법정대리인 승선동의서 1통 ②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통 ③동의자와 관계증명(주민등록 등본등)이 필요하다. 이상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한후 선원수첩교부 절차필증을 항만청에서 교부받아 선원소양교육(1일)을 받아야 한다. 승선회사(선원조회 의뢰회사)에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동회사에서 승선 선박을 지정한후 승선공인신청서를 항만청에 제출하는대로 선원수첩이 발급된다. <부산지방해운항만청>

滯賃 받을길 없는지

【문】회사가 문물 담아 2개월분의 임금을 받지못해 법원 소재재판청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사장의 재산이 전세집 전세금 2백만원 밖에 없다. 형사 사건으로 취급할수도 있다는데 어쩐지. <장무삼·부산釜山鎮구伽倻1동산713동1반>

【답】형사 고발은 불가능 하다. 귀하가 임금청구권에 의해 받아는 확정판결을 가지고 전사장의 전세금중 귀하의 채권액 한도내에서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귀하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.

門中山 所有權 등기

【문】12년전갑·을·병 세사람이 문중산을 구입,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이범에 이 전등기를 하려고보니 갑·을 두사람명의로 등기가 이미 되어 있었다. 갑은 이미 사망했는데 병도 공동소유자로 함께 등기할 방법은 없는지. <尹석봉·金海군生林면羅田리985>

【답】병은 갑의 상속인과 을등 두사람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지분이전 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공유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.

社長 바뀌어 退職金안취

【문】가내공업회사에서 1년8개월 근무하다 퇴사했다. 그런데 근무도중 회사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할수 없다며 위로금으로 1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. 근무당시 월급은 19만원이었는데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길은 없는지. <진판근·金海市東上동1구343李정부대>

【답】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. 입사한후 1년이상 근무한 사실이 불립없으니 회사대표자가 바뀌었다해서 퇴직금을 거절할 수 없다.

50년 소작한 논 앓겨

【문】50여년전부터 소작한 논1천평을 최근 그당시 주인의 아들이 자기명의로 등기해 버렸다. 농지개혁때는 소작인인 본인의 명의로 하려다 양심상 그냥 두었던 것이다. 퇴찰을 받을길은 없는지. <李경열·부산西구堂里동354의4>

【답】귀하의 경우 농지개혁 시행당시 농지분배에서 제외된것 같은데 지금에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농지회수가 어렵다. <盧武鉉 법률사무소>